

2020년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약자인 장애인의 주거 수준 향상과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2020년 저소득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2월 27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지원목적: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 도모
2. 모집대상: 20가구
3. 신청기간: 2020. 3. 9. ~ 4. 14. (기존 3월 20일(금)에서 4월 14일(화)로 연장됨)
4. 신청장소: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5. 제출서류
 - 가.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나.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동의서 1부
(임차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동의 필요)
 -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6. 지원대상
 - 가. 공고일 현재, 차상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및 임차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단, 동거인은 제외)
7. 지원내용: 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붙임 4)
※ 현물 지원

8. 대상자 제외기준

- 가.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용자를 추천하여 개조 지원을 받은 자
 - 나.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 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 타 법령에 의한 주택 개선사업 등의 수혜자인 경우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9. 대상자 선정기준

- 가.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소득수준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나. 소득기준의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장애인 등 선정
 - 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및 아동 돌봄이 필요한 한부모, 조손 장애인 가구, 범죄피해(우려) 장애인 가구
 -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 ⑤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
 -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10. 대상자 선정 통보: 2020. 3. 31. 한(별도 통보)

11. 공사시행: 2020. 6.~10. 중(별도 통보)

12. 기타사항

- 가. 기타 문의: 인천광역시 서구 주택과(주거복지팀) ☎ 560-5973

신청인 (또는 대리인)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주택) :	성별 남(), 여()
	주소 우편번호(-)	(이동전화) :
장애인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주택) :	성별 남(), 여()
	편의시설 설치 신청주택 우편번호(-)	
	주소 :	
세부사항	주거유형 ※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①자가소유 주택 <input type="checkbox"/> ②주택소유주가 허가한 공공임대주택 <input type="checkbox"/> ③주택소유주가 허가한 전·월세 <input type="checkbox"/>	
	장애유형 ※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① 장애 정도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② 장애유형(신청 장애인 외 장애 세대원 있을시 함께 표기) : [] ③ 장애인수 : 2인 <input type="checkbox"/> 3인 <input type="checkbox"/> 4인 <input type="checkbox"/>	
	실내 이동유형 ※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를 합니다. · 단독보행 <input type="checkbox"/> 거동 불편 <input type="checkbox"/> 좌식생활, 휠체어 이용 <input type="checkbox"/> 보행보조기 사용 <input type="checkbox"/> · 지팡이 사용 <input type="checkbox"/> 목발 사용 <input type="checkbox"/> 혼자거동 불가 <input type="checkbox"/> 한쪽마비 <input type="checkbox"/> · 기타()	
	개선요구사항(우선순위) 1. 2. 3. 4. 5.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을 함에 있어 본인(등본상 세대구성원 포함)의 주택 또는 임대주택 임을 확인하며, 향후 조사 결과 주택소유 또는 임대주택이 아님이 판명된 때에는 선정취소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확인 2.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 각 1부(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사업신청 유의사항	•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자의 사업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후 동일사업에 대해 중복지원 불가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불가	

소유자 (신청주택 등기명의인)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전화번호(주택)	(이동전화)
	주소 우편번호(-)	

임차인	성명	전화번호(이동전화)
	주소 우편번호(-)	

- 본인은 위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로서, 임차인이 생활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사 시행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해당 공사 후 최소 4년 이상 해당 장애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장애인 가구의 의사에 따른 이주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제외)
- 본인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후 주택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소유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동의인 제출서류	동의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붙임 4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개선 항목

구분	설치기준	적용대상(신청시)	지원 여부
공통 사항	1. 출입문	○ 통과 유효너비 85cm이상(욕실은 80cm이상) ○ 옆에 60cm 이상의 여유공간 확보 ○ 계단 등의 이동이 불편한 경우 출입문 보수 및 경사로 설치, 대문 설치 등	
	2. 출입문 손잡이	○ 레버형 등 잡기 쉽고 조작이 용이한 것	
	3. 바닥 및 높낮이차	○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 ○ 바닥 높낮이차 제거 ○ 1.5cm 이하(방풍턱 설치시) ○ 3.0cm 이하(현관에 마루귀틀 설치시)	
4. 비상연락 장치	○ 관리실, 이웃 등에 연락 가능한 장치 설치		
5. 현관	○ 동작감지센서등 설치		
	○ 측면에 75~85cm 높이에 수직·수평손잡이 설치		
	○ 마루귀틀에 경사로(유효폭 1.2m 이상) 설치	지체장애인(뇌병변포함)휠체어 사용자	
	○ 리모콘으로 조작 가능한 출입문 도어록 교체 ○ 도어체크 및 마감 설치	65세 이상 고령자	
6. 거실	○ 비디오폰 설치 또는 높이 조정(1.2m 높이 내외)	지체장애인(뇌병변포함)/휠체어 사용자, 65세 이상 고령자	
	○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청각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 세대내 시각경보기 설치		
7. 부엌	○ 휠체어나 의자 사용이 가능한 싱크대 설치	지체장애인(뇌병변포함)/휠체어 사용자, 65세 이상 고령자	
	○ 가스밸브 높이 조정(1.2m 높이 내외)		
	○ 가스 자동차단 밸브 설치		
8. 침실	○ 조명밝기 300~400럭스(lux)		
	○ 리모콘으로 조작 가능한 조명 설치	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9. 욕실	○ 욕실 출입구에 동작감지센서등 설치		
	○ 욕조 높이는 욕실바닥에서 45cm 이하		
	○ 상하 이동 가능한 샤워기 설치		
	○ 좌변기, 욕조, 세면대, 샤워 공간 주위에 안전손잡이(L 또는 -자형) 설치		
	○ 욕실 출입문은 밖여닫이, 미닫이문, 미서기문으로 설치		
	○ 수건걸이 설치(욕실 바닥에서 1.2m 높이 내외)		
	○ 좌변기 옆에 75cm 이상 여유공간 확보	지체장애인(뇌병변포함)휠체어 사용자	
	○ 높낮이 조절 세면기 설치 ○ 욕조가 없는 경우 접이식 샤워의자 설치		
10. 재래식 화장실 개조	○ 주택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9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	지체장애인/휠체어 사용자 65세 이상 고령자	
	○ 주택에 붙여 설치		
	○ 욕실을 함께 설치할 수 있음		
11. 주거환경개선	○ 도배, 장판, 간단수리, 전기누전차단기 등	65세 이상 고령자 (연계 부수공사)	

* 주택 현황 및 장애인 등급 등에 따라 외부 화장실 내부 이전, 마당 포장공사 등 가능

인천시와 서구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 대상가구: 20가구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차상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가구
- 지원내용: 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붙임 4)
 - 주택 내·외부 맞춤형 편의시설(외부 시설 포함), 현물지원

□ 신청안내

- (신청방법)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붙임1~3 서식)
- 지원대상 자격
 - 차상위장애인으로 등록 되어 있는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단, 동거인은 제외)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 기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혜자(최근 3년 이내)는 제외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기준

※ 신청인의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 소득기준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유형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대상자 선정

- ①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 ⑤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등
-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사업일정

대상가구 모집 신청	대상가구 확정	현장조사	공사시행
3월	3월	4~5월	6월~10월

기타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주택과(주거복지팀): ☎ 560-59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2.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